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3

I. 개요

1.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 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내용

-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함)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 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0%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하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5~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¹⁾
	대	중 견	중 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15 ²⁾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중소기업 졸업 후 ~3년)15%,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10%, (중소기업 졸업 후 6년~)8%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임.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이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4%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었음.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바이오·헬스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에너지·환경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O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4. 2. 29.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분야	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분야	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4. 2. 29.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3	1,08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2	29,910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29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134	41,590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402	42,88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370	26,931	1	11
20억원 이하	6,119	56,352	4	36
50억원 이하	11,814	203,843	17	536
100억원 이하	8,470	254,558	32	1,665
200억원 이하	5,506	278,567	57	2,980
300억원 이하	2,090	160,621	44	2,761
500억원 이하	1,797	198,988	93	7,155
1,000억원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5,000억원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5,000억원 초과	1	3,388	427	2,646,583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 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 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063	2,172	2	104
20억원 이하	874	3,752	2	84
50억원 이하	1,744	16,690	9	80
100억원 이하	1,392	28,987	22	240
200억원 이하	1,520	59,975	76	2,187
300억원 이하	789	48,214	52	2,327
500억원 이하	757	70,227	98	3,921
1,000억원 이하	610	102,277	219	12,769
5,000억원 이하	u	56,247	833	138,317
5,000억원 초과	u	12,759	439	1,218,875
합계	8,926	401,300	1,752	1,378,902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이병진의원안(2125), 이병진의원안(2173), 정진욱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김종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부안, 박지혜의원안, 정성호의원안(4780), 허성무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 유형별 공제율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 상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구분(%)	기본			추가*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15		25	4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15		25	1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구분(%)	기본			추가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25		35	4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25		35	4

현행	개정안																																												
	- <u>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이병진의원안(2173))</u>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td><td colspan="2">30</td><td>40</td><td>4</td></tr></table> - <u>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신영대의원안)</u>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td><td>15</td><td>20</td><td>25</td></tr><tr><td>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td><td colspan="2">25</td><td>30</td><td>4</td></tr></table> ○ <u>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24. 12. 31.</u> ○ <u>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u> - <u>2025. 12. 31. (정진욱의원안)</u> - <u>2026. 12. 31. (김상훈의원안)</u> - <u>2027. 12. 31.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허성무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u> - <u>2028. 12. 31. (조지연의원안, 박지혜의원안)</u> - <u>2029. 12. 31. (김종양의원안)</u> - <u>2030. 12. 31. (이상식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u> - <u>2034. 12. 31.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이병진의원안(2125), 정성호의원안(4780))</u> - <u>2039. 12. 31. (천하람의원안)</u> </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30		40	4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15	20	25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25		30	4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30		40	4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 시설	15	20	25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25		30	4																																									

* 박충권의원안 2024. 5. 31. 발의(의안번호 67), 김성원의원안 2024. 6. 18. 발의(의안번호

578), 이상식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3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김상훈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7),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51), 조지연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1980),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이병진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73),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정진욱의원안 2024. 8. 20. 발의(의안번호 3009),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정성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80),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며 적용기한(2024년 말)을 연장하려는 것임.

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 이상식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을 6%p(4%→10%) 상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0%p(대·중견 15%→25%, 중소 25%→35%) 상향하려는 것이며,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73)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5%p(대·중견 15%→30%, 중소 25%→40%) 상향하려는 것이고, 신영대의원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 3%→15%, 중견 6%→20%, 중소 12%→25%)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중견 15%→25%, 중소 25%→30%)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정진욱의원안은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고, 김상훈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며, 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허성무의원안·정태호의원안·신영대의원안은 2027년

까지 3년 연장하고, 조지연의원안·박지혜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며, 김종양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이상식의원안·박충권의원안·김영진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고, 김성원의원안·김태년의원안·박수영의원안·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4780)은 2034년 말까지 10년 연장하며, 천하람의원안은 2039년 말까지 1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2039년
개정안	정진욱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박수민 의원안, 정부안, 허성무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조지연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김종양 의원안	이상식 의원안, 박충권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1951)	김성원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4780)	천하람 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 제도가 시

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2022년에는 0.51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고 2023년에는 0.54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응답결과가 나타났음.³⁾

즉, 동 제도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 간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들 역시 선제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주요국의 전략산업 지원현황]

구분	지원내용
미국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CHIPS Act)
대만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
EU	'30년까지 민간투자에 430억€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The European Chips Act)
일본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세제지원(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세지출 평가서

셋째,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면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 동 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에서 총자산의 성장률이 기타 산업들에 비해 3.3~3.4%p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투자결정은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의 현금보유수준, 사업리스크, 부채비율, 대내외 경영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성장률에 대한 계수가 대체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⁴⁾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경우, 2026년 4,821억원, 2035년 6,29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세수가 10년간 연평균 5,528억원(총 5조 5,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⁵⁾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5)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 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4,821	-4,965	-5,115	-5,268	-5,427	-5,590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5,758	-5,931	-6,109	-6,292	-55,275	-5,528

주)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일반시설,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간 공제율이 차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범주를 적정하게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상식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현 행	이상식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공제율 - 기본공제: 대·중견 15%, 중소 25% - 추가공제 4%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장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이상식의원안, 정진욱의원안) * <u>임시투자세액공제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장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정진욱의원안)</u>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 <u>임시투자세액공제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u>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현행과 같음)
☐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공제율 적용(정진욱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공제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공제(제10조의3 신설) ☐ 공제율 - 기본공제: 대·중견 15%, 중소 25% - 추가공제: 10%
	☐ 시행일: 2025.1.1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시행일: 2025.1.1 ☐ 적용례: 법 시행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이후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상식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33),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정성호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51), 정진욱의원안 2024. 8. 20. 발의(의안번호 3009)

□ 4건의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안·정진욱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장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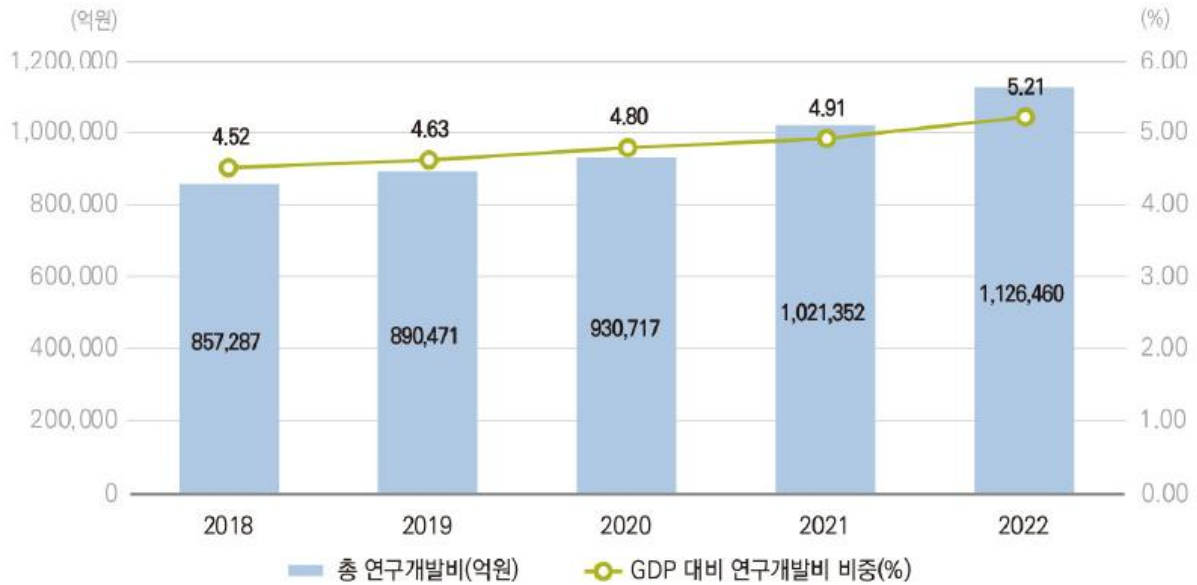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 취득에 대해 15%의 기본공제(중소기업은 25%)와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연구개발장비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 제10조의3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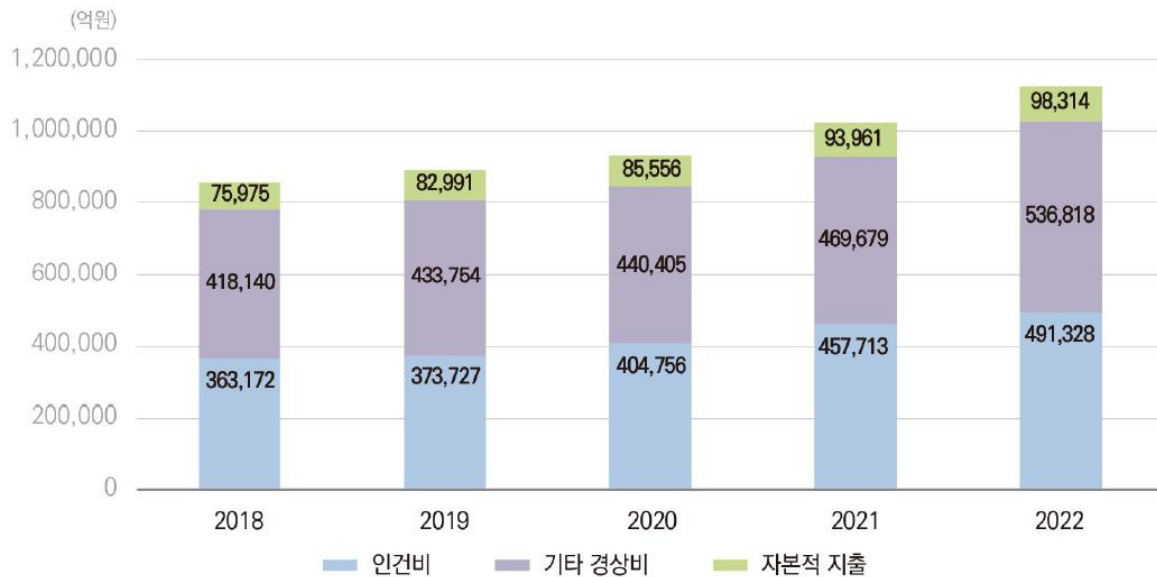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기준 112조 6,460억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고, 전년대비 10조 5,108억원 (10.3%) 증가하였음. 이 중 경상비는 102조 8,146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은 9조 8,314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우리나라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자본적 지출에는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는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연구장비’는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

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이고 ‘연구시설’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의미함.

R&D 세액공제(법 제10조)는 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제외되어 있음.⁶⁾

통합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는 공제대상 자산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그 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음. 기획재정부령은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로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일반 공제에 비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공제대상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정하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장비 및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연구개발장비 등의 취득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하나,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세액공제만 적용될 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화시설에 비해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2024년 연구개발전망조사’에 따르면 R&D 투자지수는 97.1을 기록하여 기업의 R&D 투자규모의 위축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⁷⁾, R&D 투자 감소요인에서 ‘연구개발 자금확보 어려움’이 28.2%를 차지하였음.

7) 지수가 100 이상(이하)일 경우 기업은 R&D 투자가 증가(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을 의미함.

이를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투자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강화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화시설은 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향상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반면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은 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험연구용자산은 3년 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특별규정이 있어, 연구개발장비 및 시설 투자금액은 가속상각을 통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시험연구시설	(1) 건물부속설비	5년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2) 구축물	
	(3) 기계장치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광학기기	3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5. 직업훈련용 시설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또한, 정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임.

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토지 및 건축물 추가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현행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tr><td>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4</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 년 평균 투자액) ○ 공제대상 - 토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시행령에서 규정) - 연구·시험 및 직업훈 련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등 기타 유형자 산·무형자산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정의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 설의 토지 및 건축물 ○ (현행과 같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정의 - 건축물 및 부속토지 포함(정성호의원안) - 건축물 포함(천하람의 원안) ☐ (현행과 같음)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 (현행과 같음)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현 행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제121조의26) ○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사업재편계획 요건(다음 중 1개 이상내용 포함) - 금융채무 상환 -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 -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기타 유형자산·무형자산에 투자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제121조의26) ○ (현행과 같음) ○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정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u>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이상식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33), 정성호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51),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 3건의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안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자산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안은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천하람의원안은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인데, 대통령령에서 토지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⁸⁾

특히 토지는 예외 없이 인정되지 않으나, 건축물(건물+구축물) 중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등의 건물,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

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인정하여 지원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비해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취득하고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 관련 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부담이 부분적으로만 경감되는 측면이 있음.

제조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와 건축물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들이 제조시설까지 원활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생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산업과 다르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토지와 건축물에 세제 지원을 하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일반 설비 투자에 비해 이미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과 국민경제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지·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이루어지면 세수감소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 조세지출은 1조 3,459억원으로 2020년 대비 7,233억원 증가하였고, 2022년 조세지출은 2조 1,997억원으로 2020년 대비 1조 5,771억원 증가하였음.⁹⁾

한편, 이상식의원안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일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정성호의원안·천하람의원안은 토지 및 건축물(천하람의원안은 건축물만 해당)에 대해 일반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적정 수준의 공제율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투자 지원 필요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9)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음.